2022년 특별회계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1 개 요

○ 기 간 : 2022. 5. 25.(수) ~ 5. 31.(화) [5일간]

○ 감사범위 : 2019. 1. ~ 2022. 4.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중점

- 특별회계 조성·관리체계 및 운용 현황
-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여부 및 적정성
- 주요사업 추진의 불합리한 관행 및 예산 낭비요인 점검
- 회계업무(지출 및 계약 등)의 적정성
- 기타 특별회계 운용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 지적건수 : 5건

감 사 명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비고
	계	주의	시정	기타	건	금액(원)	주의	
특별회계 운용실태 특정감사	**5**	2	3	-	3	26,235,340	1	

❑ 지적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5건**	**주의(2) 시정(3)**	**26,235,340**	**1**	
1	주차장특별회계 부적정한 세입재원 운영	주의	-	-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소홀	시정	21,925,780	-	
3	민원업무 추진 소홀	주의	-	1	
4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급 및 반납 업무 추진 소홀	시정	40,000	-	
5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시정	4,269,560	-	

감사결과 처분서(1)

【제　　목】주차장특별회계 부적정한 세입재원 운영

【현　　황】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적내용】

○ OOOOO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을 세입으로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군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 징수한 과태료,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세입)에는「주차장법」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OOOOO에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직접적인 재원 근거가 없는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처분내용】

○ 부서명 : 00000

○ 행정상 처분 : 주의

- OOOOO에서는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운영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2)

【제　　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제23조
- 2022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부당이득금 미환수 현황

보장기관	대상자	환수결정 건 수	대 상 액 (단위 : 원)	환수유형	공단통보일
증평군	OOOO OOOOOO OOO OO외 7개소	224	21,925,780	재심 등	2021.01.28. ~ 2022.04.28.

【지적내용】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며,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2022.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는 부당이득의 징수절차에 대하여 부당이득 확인 및 결정, 납부통지, 납부독촉, 압류, 공매처분, 징수금액처리, 종결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OOOOO에서는 2021. 1월 ~ 2022. 4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심, 중복청구 등의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및 미상계건에 대한 환수방법이 변경되어 통보된 건에 대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통지, 독촉, 소득 및 재산조회, 압류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부서명 : 00000

○ 행정상 처분 : 시정

- OOOOO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대상 224건에 대해 납부고지 등 징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향후 부당이득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21,925,780원(회수)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3)

【제　　목】 민원업무 추진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같은법 시행령」

○ 민원접수 지연 내역

연번	민원명	민원신청일 (신청서상)	접수일	지연접수 기　간
1	요양비 지급청구서 (OOO OOO OO)	2021.12.23.	2022.01.07.	11일
2	요양비 지급청구서 (OOO OOO OO)	2022.01.14.	2022.03.02.	29일
3	요양비 지급청구서 (OOO OOO OO)	2022.01.25.	2022.03.03.	23일
4	요양비 지급청구서 (OOOO)	2022.01.04.	2022.03.31.	57일
5	요양비 지급청구서 (OOOO)	2021.12.14.	2022.03.31.	72일
6	요양비 지급청구서 (OOOO)	2021.12.14.	2022.03.31.	72일
7	요양비 지급청구서 (OOOO)	2021.12.31.	2022.03.31.	59일

【지적내용】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따라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같은법 시행령」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서 민원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있고,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OOOOO에서는 요양비 지급 청구 민원에 대하여 표 1과 늦게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부서명 : 00000

○ 행정상 처분 : 주의

-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1명

감사결과 처분서(4)

【제　　목】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급 및 반납 업무 추진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료급여법」

○ <표 1>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현황

(단위 : 원)

지 급 일	적요	지급액 (공급가액)	채주	매입액	적정여부 (적정액)	비고
2021.03.26.	의료급여제도 OOOO OO 구입	3,000,000 (2,727,272)	OOOOOOO	-	부적정 (40천원)	금액의 1.5%

○ <표 2> 지출시 관련서류 적법여부 검토 소홀 현황

(단위 : 원)

적　요	지급액	내　　용	비　고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OOOO 구입	1,000,,000	- 구입물품 검수 소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OOOO 구입	420,000	- 일반지출결의서로 물품 구입 - 구입물품 검수 소홀	
의료급여제도 OOOO OO 구입	3,000,000	- 일반지출결의서로 물품 구입 - 구입물품 검수 소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OOOO 구입	580,000	- 일반지출결의서로 물품 구입 - 구입물품 검수 소홀	
의료급여제도 OOOO OO 구입	3,000,000	- 일반지출결의서로 물품 구입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OOOO 구입	354,060	- 일반지출결의서로 물품 구입	

○ <표 3>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지연반납 내역

구분	반납기한	반납일	지연기간	비고
2019년도 특별회계	2020.10.30.	2020.11.18.	13일	
2020년도 특별회계	2021.11.01.	2021.11.03.	2일	

【지적내용】

1. 지역개발 공채 매입 확인 소홀

○ 공채 매입과 관련하여「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 [별표 1] 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분 야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100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

○ 그리고, 제9조(공채매입 확인)에서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OOOOO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의료급여제도 OOOO OO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비가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없이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지출시 관련서류 적법여부 검토 소홀

○ 대금을 지급할 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지출의 절차)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 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런데, OOOOO에서는 표 2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를 활용하거나 물품구입 후 검수 과정을 생략하고 대금 지급을 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 지연

○ OOOOO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에서 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도지사에게 신청하며, 5항에는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은 충북도의 공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도와 2020년도 결산잉여금은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군 결산잉여금 반납 요청과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군 결산잉여금 반납 요청에 따른 공문에서 표 3과 같이 반납기한내 납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등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부서명 : 00000

○ 행정상 처분 : 시정

- 계약내용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받고, 향후 각종 계약체결 등 대가지급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특별회계 지출 및 반납업무 추진시 규정과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재정상 처분 : 40,000원(추징)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5)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표> 장기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현 금 명	금 액(원)	수납일자	예치기간
하자보증금	1,716,350	2011.12.19.	2011.12.19.~현재
보증금 및 잡종금등 기타	2,553,210	미 상	2015년 이전부터

【지적내용】

○「지방재정법」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되,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그리고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1조 내지 제67조, 제93조, 제102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는 바,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및 각종 보증)과 잡종금 등 기타 경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수납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에서는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전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자체 귀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OOOOOOO에서는 일시적인 보관금 및 잡종금 등의 예치를 목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보관내역을 확인해 본 바, 2015년도 이전에 예치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반환기간이 경과된 이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군에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와 같이 반환기간이 경과된 OOOOO공사 및 OOOOO 보증금 및 기타 잡종금(과오납금) 2,553,210원 및 하자보증금 1,716,350원 등 총 4,269,560원(이자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바 있다.

【처분내용】

○ 부서명 : 0000000

○ 행정상 처분 : 시정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등을 연찬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4,269,560원(세입조치)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